

日帝强占期 朝鮮에서의 植民地 山林政策과 日本資本의 浸透過程

배재수¹ · 윤여창¹

A Study on the Forest Policy and Japanese Capital Infiltration Proc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e Soo Bae¹ and Yeo Chang Youn¹

ABSTRACT

The forest growing stock of Korean Peninsula in 1910 is estimated to be about 600 million cubic meters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explanation of resource exploit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st growing stock was heavily biased : most of the stock wa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with a little in the south. This l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opt the double line forest polic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reation of modern ownership of forestland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1900's can be understood as a means for the colonization under heavy influenc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new ownership of forestland help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exploit the vast virgin forest in the northern region and for the Japanese private capital to acquire a large area of forest land at a low cost. A large amount of Japanese capital infiltrated into the forest sector of Korean peninsula since the Japanese firms are favored to local people in many aspec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forest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to exploit the forest resources and to help the colonization by the Japanese capital. Therefore the period is considered as an era when the basis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nation's forestry sector was undermined.

Key words : Japanese Capital Infiltration, Forest growing stock,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ese private capital

1.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won 441~744,
Korea

I. 序 論

1. 문제제기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林野所有의 零細性과 林業部門에 있어서의 낮은 自立度의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정책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산림정책이 수탈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의한 산림의 수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으며 이를 규정하는 내·외의 조건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부족하였다.

그러기에 본 연구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는 1910년을 전후로 한 조선의 산림소유실태와 산림실태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일제가 근대적 산림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고 말하여지는 「朝鮮林野調查事業」의 본질에 대한 구명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임목축적이 近代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관계로서의 소유구조와 생산수단으로서의 임목축적을 구명하는 작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 임업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물론 임업부문에 있어 自立性을 규정하는 것은 임목축적만은 아닐 것이며 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과 조직의 구성, 법적 뒷받침 및 생산관계의 발달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빠른 자본의 축적과정을 이루어 왔으며, 이 자본을 이용한 외재수입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림이 ‘경영할 만큼의 축적’을 이루고 외재화의 가격차이가 줄어든다면 축적된 자본의 투입을 통하여 높은 목재 자급도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임업 자급도를 내부에서 규정하는 것은 임목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은 좀더 근본적인 ‘과연 우리나라의 임업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업의 한 부문만이 떨어져서 자립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力關係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령국인 일본의 정치·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이 지니는 제국주의적 성격은 전체 자본주의, 특히 獨占資本主義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임업부문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지닌 일본 독점자본의 성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침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임업의 근대화에 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이루어 낼

2. 일본인 자본의 조선으로의 침투과정을 볼 때 일본인 자본의 성격이 처음부터 독점적 성격을 띠지는 못하였다. 일본인 자본이 독점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로 이러한 이유로 安秉直(1971)은 “일본제국주의가 1920년대와 같이 조선을 日本商品의 獨占的 販賣市場 및 식량원료의 공급지로서 수탈하는데 만족치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日本獨占資本의 投資市場으로서도 수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사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사람들이 구성한 사회의 변동, 발전해 온 과정을 사회학적 이론과 관점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역사³라고 볼 때, 임업부문에 있어 일본인 자본의 조선으로의 침투가 한국사회와 임업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일본인 자본이 식민지 임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침투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후 한국 사회와 임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관련 통계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이며 가장 최근의 단일한 한반도의 통계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이 시기의 산림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정책이 빚어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분단 학문을 극복하고 통일 학문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문헌분석이며, 특히 임업부분에 있어 일본인 자본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침투과정 및 성격은 새로운 사실의 발굴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에 더욱 근거있는 문헌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1차史料로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및 朝鮮山林會報를 이용하였고, 새로운 1차 사료의 발굴, 통계자료의 이용 및 가공을 통하여 임업부문에 있어 일본인 자본의 침투 및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외의 제국주의의 성격, 일본 제국주의 성립과정, 금융, 산업자본의 조선으로의 침투과정 및 성격은 2차자료를 이용하여 정리·분석하였다.

식민지 임업정책과 관련한 일본인 자본의 임업부문으로의 침투 및 자본의 성격을 ①일제하 산림소유구조의 창출 ②산업적 성격을 지닌 목재 및 제재산업, 조립투자부분으로의 일본인 자본의 침투 ③마지막으로 일본인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산림소유집중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산림이라는 자연물은 토양, 기후, 온도, 사람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상이한 공간적 분포를 갖는다. 이로 인해 전국적 접근보다는 지역별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산림의 공간적 차이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도 산림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별 통계를 이용하였다.

3. 연구의 한계

일제 강점기의 자료는 주로 일본인이나 조선총독부의 관변단체에 의해 기록되어 있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는 편향이 존재하며, 그나마 있는 통계자료 및 보고서 역시 일제폐망과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다. 또한 임업부문에 있어 근대

3. 신용하, 1982, 사회사와 사회학 : 한국사회사의 대상과 '이론'의 문제, p. 561.

및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다룬 기존의 연구성과는 몇권의 저서에 부분적인 삽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물며, 이 역시 사료의 정확성과 정밀한 분석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실의 나열 수준이거나 근거가 부족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할 당시의 조선 산림축적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자료마다 많은 편차가 존재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근거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요망되었다.

4. 기존 연구의 검토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쟁탈이 절정기에 달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레닌의 제국주의론⁴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고 규정한 레닌은 제국주의가 갖는 5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초 전 세계적 식민지 쟁탈전에 기초하여 볼 때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생산 및 자본의 집적·집중이 고도로 발전하여 일국의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제른)을 탄생시킨다는 점 ②거대은행과 거대산업의 융합에 의해 금융자본이 성립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는 점 ③자본수출의 결정적 역할을 통해 금융자본의 국제적 지배망이 형성되고 한줌에 불과한 富國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채무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 ④거대 자본가 단체들이 국제적 독점을 형성하여 세계를 직접 경제적으로 분할한다는 점 ⑤열강에 의해 지구의 정치적·영토적 분할이 완료되어 더이상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영토가 없어져 버린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식민지 쟁탈전에 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으로의 진출과정은 초기 자본축적도가 약한 탓으로 會社令(1910)의 공포 및 土地調查事業을 통하여 식민지 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후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룩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공업부문에 대자본이 이전하였는데,⁵ 특히 일본자본은 화학공업, 전기공업, 섬유공업, 광업, 철도업 등에 광범위하게 침투하였다. 당시 일본이 1930년까지 조선, 대만, 중국, 뭉고 등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 투자한 금액은 총 71억 5천 9백만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에 투자한 액수는 16억 2천 7백만원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⁶ 것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개척 중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금융자본 침투는 강점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화폐정리를 통한 금융자본 침투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銀行令의 公布(1926)와 東拓의 등장으로 조선인의

4. V.I.Lenin, 1917,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5. V.I.레닌, 남상일 역, 1988,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6.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pp.118~119.

7.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p.119.

민간자본으로 유치된 12개의 은행조차 1943년에 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⁷ 이처럼 일본인 자본의 조선으로의 침투에 관한 연구는 공업부문, 은행부문, 토지조사사업에 집중된 반면, 일본 독점자본의 임업부문으로의 진출과정 및 성격을 다룬 학술적인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단지 일제의 산림정책을 다룬 事件史⁸나 법적·제도적 측면을 다룬 것⁹이 있을 뿐이다. 이중 權寧旭¹⁰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서 조선말기의 임야소유의 실체 및 「森林法」, 「森林令」, 「朝鮮林野調查事業」, 「朝鮮特別緣故林讓與令」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산림정책의 특수성을 법제적 제도의 구멍에 치중하여概略的으로 분석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강영심¹¹은 「朝鮮林野調查事業」의 식민지성을 꼼꼼한 자료를 제시하며 논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조선임야조사사업을 「근대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제시기의 「근대적 산림 소유권 확립」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반박하고 있다.

임학자로는 지용하¹²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당시 일본인 자본의 성격을 다루지 못했으며, 국어학자인 미승우¹³ 역시 제지업 부문에 있어 간략하게 일본인 자본의 침투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

II. 本 論

일본인 자본의 식민지 조선 임업부문으로의 침투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직전의 산림소유관계 및 임지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된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

7.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pp.128~129.
8. 역사사회학은 프랑스의 아날학파의 브로델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특히 기존의 사건사 중심의 역사학을 지양하고 역사에 있어 시간지속(durées)의 개념을 도입하여 ①단기지속(courte durée) ②중기지속(moyenne durée) ③장기지속(longue durée)으로 3분하고 단기지속은 '事件'으로 중기지속은 '局面'으로 장기지속은 '構造'와 관련시켜 바라보았다. 이는 종래의 사건사와 결별하고 장기지속의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깊은 심층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힘을 고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9. -윤병석, 1964, 일본인의 황무지개척사업요구에 대하여 – 1904년 長森名義의 위임계약기도를 중심으로 -, 역사학보, 제22집, pp. 25~71.
-조웅혁, 1966, 이조시대의 임야제도에 관한 사적 고찰 –
임야소유형태의 변천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덕, 1969,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民擾(1910~1918), 上-,
역사학보 제41집, pp. 1~19.
-이만우, 1974, 이조시대의 임지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우영, 1977, 일본의 한국삼림정책에 대한 소고 – 일본의 진출시기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용하, 1990,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pp. 59~131.
10.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歴史學研究, 第297輯, pp. 1~17.
11. 강영심, 1983,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上, 한국학보, 제33집, pp. 129~157.
강영심, 1984,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下, 한국학보, 제34집, pp. 93~131.
12. 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13. 米昇右, 1983, 日帝農林收奪相, pp.46~47.

다.

1. 조선시대의 산림소유관계

먼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인 조선시대의 산림소유구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일제하의 산림소유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는 그 초기의 법전인 經國大典에 「私占柴草場者竝杖八十」¹⁴이라고 한 바와 같이 전국의 임야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국유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¹⁵ 그러나 이조시대의 집권적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중기 이후, 특히 燕山君부터는 임야의 사적 점유현상이 매우 무질서하게 전개되었는 바, 당시의 사점은 대부분이 墳墓地의 획득을 비롯한 임업생산 이외의 목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1)私占面積의 영세화 2)임산물의 私權 결여 3)임야가 자본의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⁶

조선말에 이르러서는 산림의 소유구분이 封山, 禁山 등이라 불리는 이조왕실의 官有林(直轄林), 權門豪族·貴族이 소유하고 있는 私有林, 마지막으로 임야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無主公山이라 불리는 농민의 共同利用地로 구분되었다. 이 3가지 소유형태외에 주로, 압록강, 장백산맥지대를 중심으로 한 천연의 원시림이 특별한 관리없이 존재하였다.¹⁷ 이중 관유림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封山 – 이것은 宮殿, 艦船, 王가의 檜榔材 등의 재목을 산출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관유림으로 평안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지에 설치되었다. 또 封山중에는 栗材를 목적으로 하는 栗木封山이 있고 거대한 적송재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黃腸封山이 있다. 황장봉산은 전국에 대략 20개소가 있었고, 특히 長山串(황해도), 安眠島(충남), 邊山(전북), 莞島(전남) 등이 水運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왕실용 관곽재 공급의 요처가 되었고, 그 관리보호에는 특별히 해군을 배치하였다.
- 2) 禁山 – 이것은 採樵, 冒耕, 火田 등을 금지한 산림으로, 關防禁山, 沿岸禁山, 胎封禁山, 都邑의 四山 등이 있다. 그러나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관방금산으로, 즉 兵備上의 관계에 의해 금양한 금산이다.
- 3) 蔽 – 이것은 都邑附近의 평지림에서 兵備, 防風林, 또는 風致林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 4) 寺刹林 – 이것은 사원의 풍치를 목적으로 하여 승려가 금양한 임야로 대부분은 큰 사찰주위에 존재하고 수백정보에서 수만정보에 달하는 것이 있다.
- 5) 陵園墓附屬林 – 陵이라는 것은 역대의 王 및 王비의 분묘를 말하고, 園이라는 것은 王의

14.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15. 조용혁, 1965, 이조시대의 임지제도에 관한 사적고찰 – 임야소유형태의 변천과정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2.

16. 조용혁, 1965, 이조시대의 임지제도에 관한 사적고찰 – 임야소유형태의 변천과정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7.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歷史學研究 第297輯, p. 2.

생모 또는 세자 등의 분묘를 말하며, 墓는 폐위된 왕 및 私親의 분묘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대면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유림으로서 이조말기의 권문호족과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대부분 풍수설에 기초한 사적점유였으며, 이는 官廷에 제출한 訴訟의 대부분이 묘지를 중심으로 한 분쟁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반면 조선시대 대부분의 산림은 無主公山이라 불리는 촌락공동 이용지였으며, 촌락공유림 부근의 주민들에게 산림은 농경비료, 가축사료 및 가옥용재, 신탄재의 공급처로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無主公山이라 불리우는 촌락공동 이용임지는 명칭속에 나타나듯 ‘아무 주인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의미의 無主公山은 아니었다. 촌락공유림은 인근 촌락주민의 보호와 감시 속에서 그 촌락만의 배타적인 관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 부락의 접근은 금지되었다.¹⁸ 또한 이조시대 軍兵의 訓練과 狩獵을 목적으로 설치한 講武場은 이사오는 사람이나 개간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일을 일체 금지하였지만 기존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왕명으로 인정하였다¹⁹는 기록에서 보듯이 입회임야의 권리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제의 강점이후 入會慣行이나 村落共有林이 근대적인 산림소유권을 법적으로 도입한다는 미명아래 국유림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2. 일제강점기 산림소유관계

1) 일제하 산림소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을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 및 임야내 介在地의 소유권과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종래 분쟁의 학근이었던 혼돈의 권리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民人の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조선임정의 정비에 관한 자료 제공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제는 이 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산림소유권이 비로소 창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견해가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영심(1983, 1984)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산림소유관계를 근대화 시켰다기보다는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온 촌락공유림 및 입회관행을 등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확인시켰다는 의미에서 「近代的所

18.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식민지의 문화적 관습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강점 이전인 통감부 시대에 이미 민법편찬을 위한 사전조사로 조선인의 관습을 조사(1908~1910)하였고 강점 이후 1912년까지 조사를 보충하여 「慣習調査報告書」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중 「入會權에 關한 慣習如何」라는 제목 아래 경상남·북도의 23개 사례를 중심으로 산림입회가 전 산림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舊)森林法 이후 무리하게 국유림으로 편입된 촌락공유림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예로써 제시되고 있다.(朝鮮總督府, 1913, 慣習調査報告書, pp. 93~121).

19. 宣旨, 講武場, 京畿廣州楊根等處爲一所, 鐵原安狹等處爲一所, 江原道平康伊川等處爲一所, 橫城珍寶等處爲一所, 如是定所, 其標內, 在前居住人及已旣耕田外, 新到人及新墾伐木私獵等事一切禁斷(世宗實錄 永樂 18年 2月).

有權을 法的으로 再確認」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이한 견해는 일제에 의해 성립된 「등기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朝鮮林野調查事業의 결과 근대적 산림 소유권이 성립되었다는 견해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등기제도를 현재까지 남한 산림 소유권의 기반이 되기에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 조사사업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판결기준은 일제시기의 「朝鮮林野調查令」(1918) 등의 식민지적 법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단지 결과만을 받아들여 평가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본질적 구명을 통하여 「日帝의 植民地性」을 극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임야조사사업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의 근대화를 지향했는지 아니면 식민지 산림정책의 산물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일제하 산림소유관계의 본질

임업의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의 경영단위를 창출하고 소유권을 근대화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가 舊韓國을 강점하기 직전에 존재했던 대규모 산림은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원시림과 촌락공유림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산림은 산림수탈의 주 대상지로 선정되어 일제의 이익에 맞게 수탈되었으며, 촌락공유림은 주인없는 땅으로 처리되어 불요존림 처분이나 조림대부의 형태로 일본인 자본의 직접적 산림집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 자본의 직접적 산림집중은 불요존치 국유림에 한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식민지 산림정책의 본질은 요존치 국유림의 처분과정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官有林인 封山, 특히 적송재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黃腸封山의 경우 당연히 관리기관이 있는 國有林으로 처리하여 임업경영을 위해 관리되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적인 黃腸封山인 長山串(황해도), 安眠島(충남), 邊山(전북)이 분명히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三井合名會社, 麻布某氏, 高取某氏라는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²⁰ 또한 莊島의 경우 森林法(1908)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다시 말해 부분령의 제도조차 없었던 1906년부터 일본인에게 불하하려는 의도가 보였고 특히 1908년에는 소위 「莊島事件」이라 명칭되는 완도의 황장봉산을 일본인에게 불하하려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²¹ 다행히도 완도는 「立木拂下」 불가 판정을 받고 도유림으로 귀속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일제의 산림정책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또한 산림의 소유권의 확정 및 경계확정도 하지 않은 채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후 뒤늦게 시작한 「林野調查事業」에서 조차 일제는 국유림 창출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 権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歷史學研究, 第297輯, pp. 15~16.

21. 斎藤音作, 1933, 朝鮮林業逸誌: 韓國政府時代の林籍調査事業, 朝鮮山林會, pp. 21~30.

무리하게査定을 시행하여 분쟁건수가 17,925건에 달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² 분쟁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유권 분쟁으로 ‘民對民’의 분쟁보다 ‘國對民’의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한 예로 분쟁건수가 가장 많았던 황해도를 보면 1922년 분쟁건수 522건중 ‘國對民’의 분쟁이 388건(76%)으로 ‘民對民’의 분쟁보다 3배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民對民’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日本 大資本家나 國策會社인 三井, 東拓 등과 민중과의 분쟁이었다.²³

일제에 의한 「植民地的 林野調查事業」은 緣故林野의 國有로의 강제편입을 가져와 당시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일거에 빼앗아가는 식민지 정책이었다. 당시 언론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다룬 기사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황해도 殷栗郡 南部面에 있는 1,369정보의 임야는 人民 전부가 목숨을 매이고 생활하는 터전인데 林野調查때 不要存置林으로 편입되었으며 이중에는 人民의 私有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1922년 1월 半田善四郎에게 대부해 주었다.²⁴

「사례 2」 충남 禮山郡 吾可面에 있는 170여 정보의 산림은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여 대대로 나무벌채와 숲지로 이용하여 오다가 1917년 林野調查때 소유자가 申告書를 제출하고 實地測量에서도 그 所有權 調查를 했는데도 해당 面長을 앞장 세워 모두 國有로 查定케 한 뒤 이를 海外拓殖會社의 목축지로 대부해 주었다. 인민의 진정이 있음에 따라 그 진상을 조사한 결과 民有인 점을 확인하면서도 정당한 조처가 행해지지 않았다.²⁵

이러한 몇가지 사례는 당시의 강압적인 임야조사사업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제가 행한 임야조사가 근대적인 소유권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이조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촌락공유림 및 압록강·장백산맥 주위의 대산림을 국유림으로 창출하여 일본인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일제강점 이전부터 신속하게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서의 사유림을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사적권리를 확증하기까지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첫번째로 森林法(1908)을 통한 임야의 사적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임적조사를 통하여 대규모의 국유림을 창출하고, 두번째로, 朝鮮林野調查事業(1917~1924)을 토대로 사적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산림소유관계를 창출한 후, 마지막으로 조선임야조사사업의 결과 緣故 있는 不要存國有林(제2종 불요존임야)을 사유화하는 朝鮮特別緣故林讓與令(1926)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결국 ‘일제가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풀어보면 과연 일제가 우리나라의 산림소유권을 근대화시킬 목적으로 「朝鮮林野調查事業」을 추진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꿈꾸던 일제가

22. 朝鮮總督府 林野調查委員會, 1936, 朝鮮林野調查事業報告, p. 75.

23.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山林政策, 歷史學研究, 第297輯,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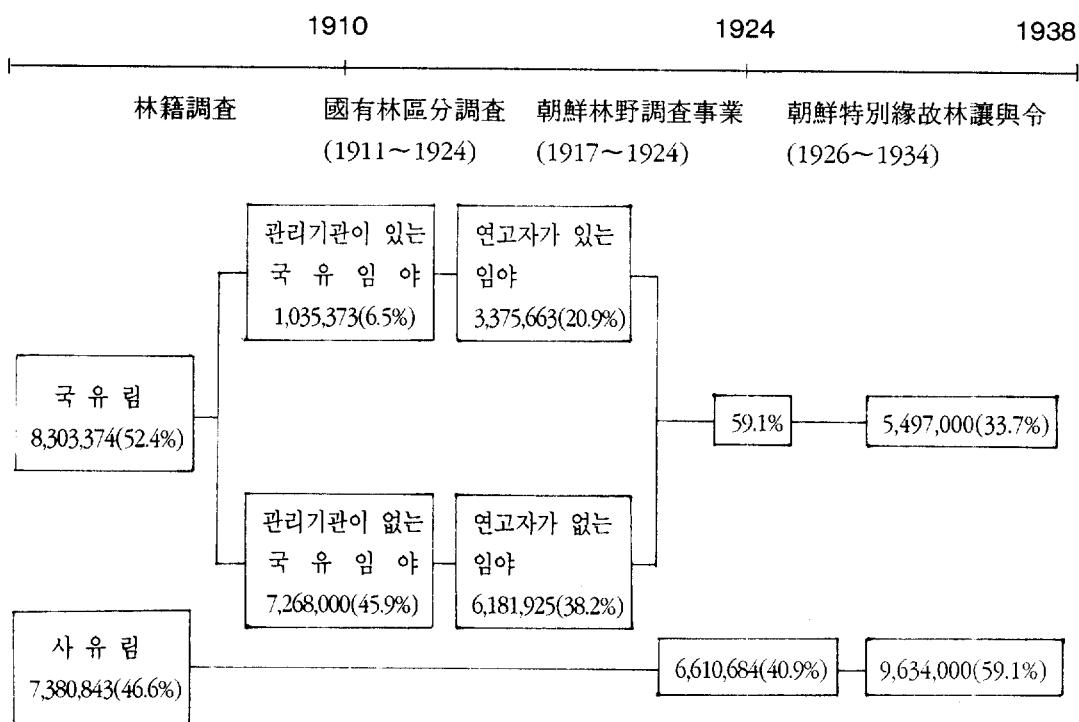
24. 동아일보, 1922년 3월 26일자 기사.

25. 동아일보, 1923년 3월 26일자 기사.

본 사업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하려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조선의 임야에 근대적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삼림수탈의 주 대상이 되어 온 국유임야를 최종적인 법으로 확인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²⁶ 이는 임직조사(1910)를 통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임야가 전체 산림의 45.9%를 차지하였다는 데서 명백해진다. 이는 앞서 조선시대에 살펴보았던 춘락공유림과 주민들에 의한 입회관행이 있었던 산림을 申告主義이라는 틀속에서 막대한 산림을 국유림으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둘째, 일제는 임야에 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국유임야에 대한 명확한 권리 확보 및 그 이용상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²⁷ 종래에는 임야에 地番制度가 없어 겨우 標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를 표시하는 데 불과하였다. 일제는 이와같은 행정상의 미미와 그에 따른 각종 청원·쟁송으로부터 日人 資本家를 보호 육성키 위하여 민유림을 조사 측량하고 국유림을 재정비한 뒤 地番을 창설함으로써 등기의 자료를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인 임업자본가들은 일제의 법적 비호하에서 안심하고 투자 경영할 수 있었으며 권리행사의



〈그림 1〉 일제하 산림소유의 변천

26. 신용하, 1979, 일제하 농민의 경작권 개간권, 입회권,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p.296.

27. 朝鮮總督府農林局, 1938, 朝鮮林野調查事業報告, p. 2.

편의를 획득하게 되었다.²⁸

세째, 일제는 국유림의 강제적 대량창출과 민유림의 소유관계 재편을 획책하여 국유림 가운데 연고림에 관한 조항을 설정해 두어,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면 당연히 私有로 사정되었을 임야를 모두 국유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임야조사사업에서 일제는 연고림에 대한 규정을 법규화하여²⁹ 사유림과 사유림이나 다름없는 임야를 강권적으로 약탈하면서도 이를 마치 “一大特典”인양 과대 선전하여 일반 민중의 소유권 투쟁을 무마시키려 하였다.³⁰

네째, 이미 창출된 국유림의 재확인 작업에 의해 재창출된 국유림과 보다 많은 임야를 연고림의 형식과 조림대부, 혹은 양여의 방법을 통하여 일본 이민자들에게 분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제는 森林法(1908)을 통해 대량으로 창출된 대량의 국유림과 조림대부 및 불요존림 양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획득한 일본인 산림소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근대적 산림소유권을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산림소유관계의 재편과정 역시 식민지 산림정책의 산물로써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에 깔고 실시된 몇차례의 산림소유구분조사의 결과는 <그림 1>로 정리해 보았다.

3. 일제강점기 산림자원의 변천과정

과연 1910년 일제강점 당시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면적 및 축적은 어느정도였을까? 과연 그 자료는 믿을만한 통계자료인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말까지의 자료는 전체 조선의 산림면적을 다룬 것은 없으며 더욱 임목축적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자본의 原始的 蓄積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 및 임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근대적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구실아래 토지를 수탈하려는 약탈적 성격³¹과 조세원 확보를 위한 조선에서의 정밀한 토지측량이 결국 근대에

28. 강영심, 1983,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上), 한국학보, 제33집, p. 134.

29. 朝鮮林野調查令施行規則 第1條 참조.

30. 강영심, 1983,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上), 한국학보, 제33집, p. 134.

31. 일본인 재정고문이 제1차 한일협약(1904. 8)에 근거하여 한국에 파견된 것은 1904년 10월이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재정기초확립,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자본 진출의 땅고름을 위하여 무엇보다 근대적 토지소유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林業發達史論, p.2). 이러한 인식 하에 일제는 조선의 토지에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조치인 등기제도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미 조선왕조 말기까지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을 등기제도라는 양식으로 ‘재’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도리어 그보다는 그들의 식민지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 ‘사업’ 실시의 진급하고 본질적인 목적이었고 과제였다. 등기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용이하게 등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신용하, 1990,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pp. 62).

들어 산림자원의 현황을 비로소 알게 해주는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1) 산림면적의 변천과정

일제의 조선에 대한 산림조사는 전쟁수행을 위한 산림조사(1904~1905)로 러일전쟁 당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산림조사, 산림수탈을 전제로 하여 일제강점 이전부터 이루어진

〈표 1〉 일제의 조선삼림조사 일람표

조사일자	조사지역	조사자	조사기관	보고서(출판연도)	비고
1902	시베리아, 청국, 조선	本多靜六	農商務省	출판불명	明治林業逸史續編 (1931) 중 p.511 참조
1902.5~8	조선	田中喜代次	〃	韓國森林視察復命書 (1903)	지세 및 삼림개황, 삼림행정, 목재상태 등에 관한 조사임
1902.5~ 1903.4	청국, 한국	宮島多喜郎 田中喜代次	〃	清韓兩國森林視察 復命書(1903)	주로 목재수급정황
1904.7~12	압록강 상,하 유역	西田又二 中牟田玉郎	〃	鴨綠江流域森林作業 調査復命書(1905)	
1905.3~10	압록강 유역	今川唯市	陸軍參謀 本部	長白山脈林況調查 復命書(1905)	
1905.7~11	한국	永田正吉 西田又二 道光充之 長倉純一郎	農商務省	韓國森林復命書 (1905)	南韓森林調査書, 北韓 森林調査書로 구분
1906.9~10	한국	川瀬善太郎	〃	韓國森林調查報告 (1907)	
1908	청국, 한국	堀田英治	〃	清韓兩國及臺灣各地 市場材情況調查書 (1909)	
1911.6~9	조선	平態友明	〃	朝鮮森林視察復命書 (1913)	삼림제도, 삼림상태, 삼림이용, 목재상업 등에 관한 조사임
1916	백두산	吉岡豪雄	기관불상	白頭山森林調查 復命書(1913)	미공개 기록임. 명치임업일사속편, p. 164 참조

출처 : 강영심, 1983,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上, 한국학보, 제33집, p.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산림조사³² 및 조세권 확정을 목적으로 실시된 소유별 산림구분조사로, 크게 이 세가지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조사 모두 식민지 모국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산림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하였고 이를 「復命書」의 형태로 일본에 제출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중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조사는 1910년도의 林籍調查³³였다. 이 조사는 5개 월간의 단기간에 수행되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통계가 朝鮮總督府 統計年譜에 수록되었으나, 이는 시기의 단기간에서도 보여지듯이 정확한 實查는 아니었다. 이후 1911년에

〈표 2〉 지역별 산림면적(1910~1942)

지역＼연도	1910	1915	1927	1928	1929	1935	1940	1942
경기도	715	715	779	740	775	771	1225	770
충북	533	533	546	502	541	538	537	537
충남	469	469	499	512	499	497	497	497
전북	531	531	557	522	538	552	547	545
전남	971	971	895	907	896	883	853	879
경북	1317	1317	1380	1394	1376	1378	1354	1379
경남	881	881	852	855	852	846	845	845
황해도	1005	1005	1008	1020	1005	993	904	992
평남	999	999	999	966	1003	996	987	983
평북	2395	2395	2348	2350	2344	2306	2306	2308
강원도	1905	1905	2222	2066	2196	2187	1854	2173
함남	2544	2544	2681	2719	2694	2675	2659	2662
함북	1618	1618	1704	1722	1704	1705	1705	1699
총계	15883	15883	16470	16275	16443	16333	16272	16274

출처 : 각년도 朝鮮總督府統計年譜.

32. 일제의 한일강점 이전에 벌써 일본의 산림국에서는 압록강 지역의 산림수탈을 전제로 1904년에 西田又二와 中矢田五郎를 시켜 조사한 적이 있다(山林國, 1904年, 鴨綠江地域森林作業調査復命書). 이 보고서가 나오기 2년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일본의 산림국에서 파견한 田中喜次郎에 의해 삼림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복명서에 의하면 한국측 압록강 유역에서의 임업개발 가능성은 매우 유망하다고 보았다. 즉, 복명서는 이 지역에서의 벌출작업은 ①대단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②소자본으로 가능하며 ③일본인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④北清 大市場을 가까이 두고 있으며 ⑤매매기관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결론 짓고 일본 벌출자본의 진출을 주장했다(山林局, 1902年, 韓國森林視察復命書).

33. 「林籍調查內規」 중 제1조 '임적조사는 전국에 있는 관민유임야의 배치 및 임상의 개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조사는 본년(1910년) 3월로써 개시하여 8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업은 실사의 원칙에 따라 산림국 상무원으로 하여금 종사케하여 9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齊藤音作, 1933, 朝鮮林業逸話: 韓國政府時代の林籍調査事業, 朝鮮山林會)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산림수탈을 전제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작되어 1924년에 완료된 國有林區分調查와 1917년에 실시된 朝鮮林野調查事業(1917~1924)에 의해 소유별, 지역별 산림면적 및 축적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1927년도 朝鮮總督府 統計年譜에 나타나게 되며, 이후 통계구성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틀로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27년도 산림면적이 전 기간을 통하여 최고치인 1,647만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國有林區分調查」 및 「朝鮮林野調查事業」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후 대체로 총 산림면적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로 이루어진 압록강 유역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보유지역이었으며³⁴⁾ 다음으로 강원도, 함경북도가 뒤를 잇는다.

다음은 산림을 구성하는 질적인 차이를 1910년도와 1928년도의 산림구성으로 비교하여 보자. 〈표 3〉과 〈표 4〉를 비교해 볼 때 용어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표 3〉의 成林地,

〈표 3〉 林籍調査 결과 산림면적(1910)

구 분	단위 : 정보				
	관리기관이 ¹⁾ 있는 국유임야	관리기관이 ²⁾ 없는 국유임야	사원이 관리 ³⁾ 하는 사원임야	사 유 ⁴⁾ 임 야	계(비율)
성 림 지	626,840	3,666,561	96,721	731,563	5,122,122 (32.3%)
치수발생지	186,909	1,987,851	34,411	4,410,302	6,619,473 (41.8%)
무립목지	221,624	1,613,589	34,270	2,237,978	4,107,461 (25.9%)
계(비율)	1,035,373 (6.5%)	7,268,001 (45.9%)	165,402 (1.0%)	7,380,843 (46.6%)	15,849,619 (100%)

주 : 1) : 封山, 禁山, 牧場, 柴場 등 2) : 無主公山과 村落入會林

3) : 寺院林野

4) : 墓地, 賦牌地, 買收文券地

- 본 조사는 제주도 및 기타 海島 전부를 제외

- 입회국유림, 즉 공산에서 지역민과의 관계가 밀접한 부분은 임시로 국유의 구분으로부터 제외하고 사유임야의 구역에 편임함

- 답사의 계절 및 天候 등의 관계에 의해 활엽수의 치수 발생지가 무립목지로 오인될 경우도 있고, 故로 실제는 치수발생지가 약간 증가하고 무립목지는 약간 감소함.

출처 : 朝鮮山林會編, 1933, 朝鮮林業逸誌, p.33.

34. 당시 일본은 朝鮮을 北鮮(함경남도, 함경북도), 西鮮(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中鮮(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南鮮(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으로 구분하였다(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p.20).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민족이 고유하게 사용하였던 용어인 관동, 관서, 중부, 남부로 대신하였고 고유명사의 경우만 추야민옹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椎樹發生地, 無立木地를 <표 4>의 立木地, 散生地, 無立木地로 본다면 立木地는 늘어나고 椎樹發生地는 줄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1910년도의 치수가 생장하여 입목지로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1910년 무립목지는 무려 400만 정보로 당시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했다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1928년 무립목지가 220만 정보로 줄었다고는 하나 1910년에 항목으로 자리잡지 않았던 화전, 개간적지 등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불요준 국유림에 존재하는 산생지나 무립목지는 19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독점자본이 조림대부를 통하여 진출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

2) 임목축적의 변천과정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산림자원의 현황을 다루는 자료 중 면적에 있어서는 異見이 보이지 않으나 축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朝鮮總督府統計年譜] 및 [朝鮮の林業]과 지방에서 발간한 국부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朝鮮の林業]에서 밝히고 있는 통계를 보면 1923년 국유림 총축적 약 4억m³에서

<표 4> 林野整理調査 실시 후 산림면적(1928)

단위 : 정보

구 분	국 유 림	민 유 림	총 계
立木地	針葉樹林	1,663,093	2,828,360
	闊葉樹林	2,154,595	665,902
	針闊混生林	1,184,833	677,197
	竹 林	6	3,091
	計	5,002,527	4,174,550
	散 生 地	2,180,508	1,504,842
	無 立 木 地	1,228,823	990,025
	火 田	281,798	84,666
	開 墾 適 地	114,507	92,776
	放 牧 適 地	91,505	87,659
除 地	採 草 適 地	122,819	162,208
	除 地	156,743	202,446
	計	767,372	629,755
	合 計	9,173,230	7,299,172
			16,472,402

주 : (1)미립목지란 입목도 10%미만, (2)산생지란 입목도 10% 이상 30%미만, 입목지란

(1)과 (2)를 제외한 산림.

침활흔효림중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70% 이상을 점하는 경우 순림으로 취급한다.

출처 : 朝鮮總督府 鐵道局 營業課, 1933年, 朝鮮に於ける林產品に關する

經濟調查, pp.15~16.

³⁵ 일제말(1940)에는 전 임목축적이 2.2억m³으로 줄어들어,³⁶ 1923년도의 민유림의 축적을 제외하고도 약 1.8억m³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 당시의 임목축적은 1910년도 林籍調查에서 부분적인 조사면적에 대한 축적이 나와 있을 뿐 전국적인 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지용하는 1919년 鴨綠江 採木公司에서 발간한 鴨綠江林業誌의 자료를 인용하여 230만정보의 면적에 약 5억m³의 축적이 존재하고, 전 조선의 축적은 최소한 7억m³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축적의 감소는 일본의 수탈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우리나라의 산림통계에서 1910년도의 임목축적을 715백만m³³⁸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위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단 18년(1910~1928)만에 임목축적이 4억m³이상이 줄었다는 것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자료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단지 자료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시기 우리나라 임업의 토대를 바로잡는 첫 디딤돌을 세운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용하의 주장을 살펴보자. 지용하는 1919년 鴨綠江採木公司가 간행한 鴨綠江林業誌資料를 인용하여 그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먼저 그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록 하자.

이 자료에 의하면 압록강 유역 약 180만 정보의 면적에 약 3억m³에 가까운 축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자료를 인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둔다.

한일합병 당시의 한국내 삼림의 총축적을 산출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이며 대체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삼림자원을 수탈함으로써 자체의 재정정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단편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축적에 대한 자료조사와 통계를 작성한 것이니 그를 이용하여 국부에서 전체를 추산하는 방법으로概算하려 하는 것이다. 일제의 한국강점에 의하여 인계된 삼림자원의 축적량을 확인함으로써 그 착취의 방법과 조직 또는 체계확립을 기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소득률 이득을 산출하는데 필요함으로써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부적 조사를 연차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는 야망달성을 위하여 1913년 대밀림지대의 사업안 편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조사시에는 里面洞界線이 확정되지 않은 시절이니 국 유와 민유의 구분조사도 미완료중이고 미정비된 상태에서 부득이 압록강 십대지류 유역별로 면적과 축적을 조사한 것이다. 이 지역은 주로 영림창 소관 요존예정임야와 동임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임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³⁹

35. 본부 관내의 국유림 약 3백12만 정보는 남벌, 화재 또는 화전의 침해를 입은 箇所가 많고 그 임상은 대체로 양호하지 않으며 종래의 구분조사 등에 의해 추측한다면 그 축적은 대략 3억7천만척체(약 1억3천만m³)—그중 침엽수는 약 3할, 활엽수는 약 7할로 전망)가 되고 여기에 영림창 관내의 축적을 환산하면 全鮮 국유림의 축적은 대략 12억척체(약 4억m³)로 환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朝鮮總督府 殖產局, 1923, 朝鮮の林業, pp. 34~35).

36. 朝鮮總督府 殖產局, 1940, 朝鮮の林業, 附錄.

37. 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 164.

38. 韓國農政四十年史, 198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482.

39. 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p.122~123.

〈표 5〉 압록강 유역별 축적량

지류명	면적(町步)	축적(m ³)	蓄積/町步
小白水			
鯉明水	52,136	12,224,400	234.5
胞胎川			
佳林川	78,329	18,798,943	240.0
五是川	18,963	3,171,143	167.2
虛川江	323,484	60,599,237	187.3
三水川	59,115	7,368,609	124.6
長津江	611,613	105,135,992	171.9
厚州川	93,090	26,069,749	280.0
富山洞江			
厚江	68,590	11,352,660	165.5
中江川			
湖芮川	40,567	4,575,800	112.8
慈城江	120,712	15,912,294	131.8
三豊川	23,868	4,524,027	189.5
禿魯江	264,520	33,649,731	127.2
滑原川	47,981	3,110,000	64.8
計	1,802,968	303,753,205 [†]	168.5

주 : 원문과의 차이는 尺緩라는 단위를 m³으로 환산(1尺緩=0.334m³)하는 가운데 생긴 차이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 생각됨(원문에는 303,147,000m³).

출처 : 鴨綠江採木公司, 1919, 鴨綠江林業誌.

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p.123~124에서 재인용

이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전국지역의 축적을 조사하지 못하고 영림창 소관 요존예정 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 이유로 임지 소유권의 미미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압록강 유역의 산림조사를 강행하였을까?“ 이에

40.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완결된 토지조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田, 塙, 垈)를 그 주대상으로 하며, 단지 조사지 사이에 개재된 면적 약 50,000평 이하의 임야만은 부수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朝鮮總督府土地調查局, 1918, 朝鮮土地調查, p. 82) 토지와 함께 조사된 임야는 겨우 287,000평에 불과하였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38, 朝鮮林野調查事業報告, p. 7).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에서 임야를 제외시킨 원인은 조사 작업상 일반 토지의 수 배가 되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비해 실제적인 경제가치가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야가 아직 과세 대상지가 아니었기 때문(松本伊織, 1925, 朝鮮の林野制度, 朝鮮, 第123卷, p. 20—임야의 과세는 1933년도에 이루어짐—연구자 주)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같이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치 않고 「森林法」과 그 법인과정에 불과한 「森林令」 및 「國有區分調查」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하고 기관적인 토지조사만으로 토지에 대한 지적제도를 완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森林令」 및 「國有區分調查」에 의해 조림대부의 형식을 벗어既創出된 국유림을 일인자본가나 移民들에게拂下해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의

대한 고찰은 당시 일제에 의한 조선의 산림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압록강 지역의 산림자원 조사가 크게 두 가지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압록강 지역의 산림자원은 당장 벌채하여 상품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팔아 부족한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확한 압록강 지역의 산림자원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에 의해 통감부 시대부터 특별히 관리되어졌다.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외에 일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더해졌는데, 이중 특별회계는 「韓國鐵道特別會計」, 「韓國鐵道用品資金特別會計」, 「韓國森林特別會計」 등 세가지에 지나지 않았다.⁴¹ 이는 자원수탈과 대륙으로의 침략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국경임업개발의 특수한 위치를 보여준다. 또한 ‘합방’ 후 불과 3년 동안에 조선총독부는 소위 영림창 사업을 통해 압록강·두만강 연변의 목재를 대규모로 벌채하여 약 10억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 금액은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 약 5천 8백만원의 18배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특수성을 알 수 있다.⁴²

둘째, 1919년이란 시기는 일본이 제1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호황을 맞이한 시기로, 일본내의 독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불요존림의 대부를 통한 임지확보와 압록강 대산림을 기반으로 한 목재관련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조선내 최대 산림지역인 압록강 유역의 산림조사를 정확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前者は 森林法과 森林令의 적용으로 불요존 국유림으로 처리된 지역을 조선총독부의 뒷받침을 통하여 일본 독점자본이 쉽게 조림대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後者の 경우는 벌채업자의 허가기준을 총독부가 까다롭게 정함으로서 일본 독점자본이 아니면 벌채권을 갖기 어렵게 하였다(指定商主義).⁴³

지용하는 위에 인용한 축적량이 한일합병 직후에 불완전한 상태로서 극히概算的인 시업안 조사에서 산출된 수량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국유림의 존폐 구분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1918년 현재 시업안 편성 완료분 약 50만 정보에서 1억m³으로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며 그 압록강·두만강 연안 230만 정보에 대략 5억m³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鵠綠江 林業誌 1장 총론은 그의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 해준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급증으로 인하여 등한시해 오던 사유임야와 연고 있는 국유임야의 권리 관계를 식민지적 근대 소유체제로 재편하여 수탈 임정상의 諸障礙를 제거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의 말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임야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강영심, 1984, pp. 150~151).

41.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林野弘濟會, p. 51.

42. 강만길, 1964, 한국 현대사, p. 106.

43. 당시 일본 정부가 소수의 독점자본가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경성의 목재상 松本豊作(熊野商店)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영림서가 일반 사람에게 불하하고 있는 목재이지만 저것은(국유산림의 관행벌채목—연구자) 目下의 경우에 있어 이미 정해진 三井物産, 共榮木材會社 및 대구의 松原長太郎 商店의 3개소 만으로 불하하고 있는 것을 더욱 확대하여 관철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목재의 가격만이라도 영림서가 뚜렷이 구별되게 공포한다면 어떻습니까”(朝鮮山林會報, 第96號, p. 36). 즉, 가격을 공포하지 않고 값싸게 특정기업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특정자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1917년에 실시한 전 일본국내 本州, 四國, 九州의 요존 및 불요존 국유임야 426만 정보에 대하여 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재 신탄재를 총합한 재적 2억5천9백만m³과 압록강의 축적을 비교할 때 면적에 있어서 반분인 230만 정보에서 일본의 축적의 1배반을 능가하는 재적을 보유하였으니 그 삼림의 偉觀을 가히 추상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1939년 신의주 영림서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압록강 국유림의 축적은 180만 정보에 약 5천만m³으로 1918년에 비해 2억5천만m³이 줄어들었다.⁴⁵ 물론 정확하게 공통된 지역은 아니지만 신의주 영림서가 관할한 지역이 국유림이었다는 사실과 압록강 유역의 삼림이 울창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나무의 연년성장을 제외하고 조림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1년 평균 12.5백만m³을 벌채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일 1년에 2%씩의 연년성장을 감안한다면 약 18.5백만m³에 가까운 산림을 매년 벌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6〉 일제하 임목축적의 변천

단위 : m³

	1910 ¹	1928	1935	1942
경 기 도	7,622,504	5,777,127	6,735,522	7,494,501
충 북	13,085,639	2,882,359	4,707,328	4,710,544
충 남	4,822,722	3,396,061	3,483,273	5,082,719
전 북	9,992,211	8,288,817	8,807,990	11,784,535
전 남	5,171,116	12,133,980	14,266,069	14,413,418
경 북	6,778,823	21,849,132	15,868,861	18,031,619
경 남	6,796,421	6,603,188	7,156,637	8,051,448
황 해 도	13,288,772	4,103,342	4,564,623	5,364,962
평 남	32,311,089	6,699,088	13,741,384	16,236,242
평 북	134,890,383	61,848,644	44,040,657	40,866,181
강 원 도	62,334,949	27,045,959	20,816,958	23,333,502
함 남	234,407,685	63,945,053	34,990,483	34,322,032
함 북	80,359,840	50,888,513	36,643,597	34,433,543
총 계	591,645,200	276,463,262	215,823,782	224,125,246

주1: 1910년도 자료는 추정치임(표 8참조).

출처 : 1910, 1935, 1942년도 자료는 朝鮮總督府統計年譜.

1928년도 자료는 朝鮮における林產品に關する經濟調査, 1933, 朝鮮總督府 鐵道局營業課, pp.25~26에서 발췌.

44. 鴨綠江採木公司, 1919, 鴨綠江林業誌, 第1章 總論 2面.

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 126.에서 재인용.

45. 新義州營林署, 1939, 新義州營林署 事業要覽.

위의 사실을 토대로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일제 강점 직후의 산림자원이 36년간의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있을 수 있다. 두번째로 이 변화를 규정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대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당시 목재수급과 관련한 자료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일제 강점기의 임목축적의 변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자료상에 도별로 전국적인 임목축적이 처음 기재된 해는 1927년으로(조선총독부 통계연보), 國有林區分調查(1911~1924) 및 朝鮮林野調查事業(1917~1924) 등을 끝내고 3년간의 자료정리후 통계치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1910년 林籍調査후 17년간 전국적인 임목축적은 자료로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몇몇 학자에 의해 추정되었을 따름이다. 본 연구자 역시 1910년에 실시된 부분적인 實查를 통한 임적조사를 성립지에 가중치를 두어 도별로 임목축적을 추정하였으나(표 9참조) 1928년 까지의 대규모의 임목축적 감소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차세히 다룰 수는 없었다. 단지 이 논문에서는 위 자료의 적합성과 개략적인 산림감소의 원인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1928년도 北鮮의 임목축적은 너무 과소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1928년 岩本善文과 久保田卓治가 저술한「朝鮮の開拓」중이 지역의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은 위의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중 국유로서 요존림에 편입되어 대부, 임산물의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면적은 함남 1,629,048정보(예정), 함북 1,035,264정보였으며, 다음에 불요존림, 민유임야로서 조림 대부, 별채 등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함남 1,087,054정보, 함북 664,071정보로 총 1,751,125정보였다.

위 책에서 제시한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산림 축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함북의 요존림 약 백만정보를 해당 도청에서 조사한 것을 비슷한 임상을 갖는 함남에도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함북의 해당 조사지역은 함북 요존림 중 茂山 500,762정보, 會寧 127,223정보, 富寧 152,099정보, 鏡城 84,107정보, 明川 171,073정보로 총 1,035,264정보였다. 이중 561정보는 읊종 요존림으로서 도지사 소관에 속하였다. 해당 도청의 조사에 의한 목재의 재적은 침엽수 33,400,422m³, 활엽수 10,360,346m³으로 총 43,760,768m³이 된다.

〈표 7〉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산림면적

단위 : 정보

	임목면적	산생지	미임목지	총 산림면적
함 남	2,315,383 (85%)	134,088 (5%)	266,631 (10%)	2,716,102 (100%)
함 북	837,709 (49%)	540,174 (32%)	312,448 (19%)	1,699,335 (100%)

출처 : 岩本善文, 久保田卓治, 1928, 北鮮の開拓, pp. 579~580.

이를 함남, 함북의 요존림 축적이 같다고 전제할 때 요존림 총축적은 124,162,830m³이 된다. 이 중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림과 민유림은 함남 1,087,054정보, 함북 664,071정보로 총 1,754,125정보였다. 이 중 절반은 수목 산생지 또는 미립목지로서 제외하면 결국 兩道를 통하여 875,562정보를 임목지로서 생각할 수 있다. 함북의 표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정보당 46.67m³을 위 임목지 면적에 곱해주면 40,862,501m³이 된다. 결국 함남, 함북의 총 임목축적은 165,025,331m³이 된다. 이는 192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나타낸 114,833,566m³에 비해 약 5천만m³의 차이를 나타낸다. 연구자는 1923년 「朝鮮の林業」에서 밝힌 조선의 국유림 축적이 4억m³으로 제시한 것을 참조한다면 단 5년만에 1억3천m³이 줄었다는 것은 상식 밖이므로 오히려「北鮮の開拓」에서 밝힌 자료가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는 자료 한계상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제가 상품가치가 높은 北鮮의 산림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함으로써 수탈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중일전쟁(1937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림은 전쟁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로 벌채되고 있으며 특히 1941년에는 목재통제령이라는 전시체제하의 공출 정책을 써 가면서 산림을 수탈하는데 1935년보다 1942년이 더욱 임목축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의문이 간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의 목재수급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일제시기 조선의 용재수급량의 추이

단위 : m³

연 도	공 급 량 생산량(A)	이입량	수입량	이출량	수출량	소비량(B)	자급율 (A/B)(%)
1910	747,540	—	—	—	—	—	—
1915	831,780	—	—	—	—	—	—
1920	989,680	—	—	—	—	—	—
1925	1,490,080	—	—	—	—	—	—
1930	1,349,226	72,264	163,555	11,534	82,567	1,490,818	91
1935	2,267,059	242,475	130,856	68,898	232,629	2,338,863	97
1940	3,367,125	879,165	89,759	72,796	146,400	4,116,853	82

주 : 원문은 단위가 石이었으나 편의를 위해 m³으로 환산하였음.

출처 : 萩野敏雄, 1964, 朝鮮, 滿洲, 臺灣林業發達史論, p.137.

1926년 「朝鮮林政計劃」과 1932년의 「北鮮開拓事業」에서 추구한 조선목재의 자급달성을 위해서는 북선 지방의 대규모의 산림개발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1931년도 만주사변 이후 계속되는 전쟁용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벌채는 더욱 늘었었으며 사회의 혼란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이탈하여 「植民地型 火田民」이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46. 배재수, 윤여창, 1993, 임업경제 창간호 : 우리나라 山村問題의 史的 考察에 관한 研究, pp. 16~34.

〈표 9〉 1910년도 우리나라 임목축적 추정

지 역	산림면적			성립지			조사지역			조사지역			단위 : 면적 ; 정보 ; 축적 : m 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경 기 도	714112	117263	91720	26400	1716092	65.00	0.16	18.71	10.67	13361120	7622504				
충 북	532649	86027	138983	61697	9384782	152.11	0.16	67.52	24.57	35966951	13085639				
충 전	468692	91977	46591	10010	524864	52.43	0.20	11.27	10.29	5279983	4822722				
전 전	527466	267050	96719	84136	3148117	37.42	0.51	32.55	18.94	17168547	9992211				
경 경	982628	85264	55764	30277	1836249	60.65	0.09	32.93	5.26	32356882	5171116				
경 남	1309274	174428	247141	100334	3899296	38.86	0.13	15.78	5.18	20657225	6778823				
경 해	887195	125826	87997	34572	1867387	54.01	0.14	21.22	7.66	18827195	6796421				
황 해	1004839	110469	241003	82503	9924626	120.29	0.11	41.18	13.22	41379782	13288772				
평 남	999292	236497	581180	308359	42129140	136.62	0.24	72.49	32.33	72437649	32311089				
평 북	2295316	878892	215169	58860	8363995	142.10	0.38	38.87	54.41	89222939	124890383				
강 원	1910344	672144	749471	410852	38102606	92.74	0.35	50.84	32.63	97120617	62334949				
합 합	2517851	1458818	758565	505133	81166436	160.68	0.58	107.00	93.10	269409902	234407685				
총 계	15849619	5122685	3676203	1956773	225997763	115.50	0.32	62.50	37.33	990535776	591645200				

주 : F—조사지역 성립지 Iha당 조사지역 축적

II—조사지역 Iha당 산림축적

J—조사지역 평균축적을 전체 산림면적에 곱한 산림축적

K—성립지에 가중치를 줄 평균축적을 전체 산림축적에 곱한 산림축적

G—1910년도 전체산림증 성립지를

I—성립지에 가중치를 둔 Iha당 평균 산림축적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속에서도 도리어 임목축적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1930년대 들어 산림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이 자료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표 9〉는 1910년도 부분적으로 조사된 林籍調查를 당시 총 산림면적으로 확대하여 일제강점 당시의 임목축적을 추정해 본 것이다. 당시 조사면적은 360만 정보로 이중 190만 정보가 성립지로 조사되었고 조사지역의 1정보당 평균축적은 62.5m^3 이다. 추정방법은 성립지의 축적에 가중치를 두어 구하였으며 이는 성립지의 축적이 치수발생지나 무립목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과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의 1910년도 임목축적은 약 $6\text{억}\text{m}^3$, $27.3\text{m}^3/\text{정보}$ 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성립지에 가중치를 두어 추정한 수치다. 이는 지용하의 추정보다 약 $1\text{억}\text{m}^3$ 이 작은 것이지만 일제에 의한 유일한 전국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추정으로 이후 일제의 산림수탈을 설명하는데 더욱 합리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지역별 임목축적을 살펴보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의 산림은 압록강 유역의 평북과 함남에 61%의 산림이, 두만강 유역의 함북과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도에 24%의 산림이 편중되어 존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산림이 황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관북(北鮮)이나 관서(西鮮)지역에 비해 임야율은 낮고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대량의 연료림을 주위의 산림에서 충당하였던 원인⁴⁷과 조선말 사회의 혼란으로 禁山의 봉괴 및 임정의 혼란⁴⁸이 원인이 되어 산림이 황폐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산림의 지역별 편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제는 二線 山林政策⁴⁹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4. 임업부문으로의 자본 침투를 위한 법적 정지작업

일제 강점이전에 일본은 장래의 식민지 국가를 전제로 하여 조선의 근대적 소유권의 법적 기반인 담긴 森林法⁵⁰을 만들었다. 이 森林法의 조항중 부칙 제 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않는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면 소유의 근대화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의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불평등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속에서 이 조항은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조세를 거둬 들이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두번째로, 申告主義에 입각한 소유권 창출은 소유가

47. “1가구당 1년간 연료 소요량을 2,000貫으로 하면 11.13m^3 이나 소비”(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169).

48. 한동환, 1992, 조선전기 한양금산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49. 산림부문에 있어서는 중남한 지역, 특히 인가부근의 황폐임야에 대한 復興造林事業을 宣傳林業으로 이용하였으며 영림창 소유임야의 삼림수탈은 斫伐事業으로 이용하여 한국임정의 기간은 선전(助長)임업과 이용(收奪)임업의 二線政策을 수립한 것이다(지용하, 1964, 한국임정사, p. 164).

50. 현재의 山林法과 구분하기 위하여 舊森林法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1908년 1월 21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법무대신 조중옹의 서명으로 우리나라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명확하지 않은 촌락공유림을 대규모의 국유림으로 강제 창출시켰으며 이는 이후 일본인 자본의 토지지배로 구체화된다.

특히 구한말에는 財政顧問의 의견에 따라 겨우 측량기술견습소에서 강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민영환이 세운 홍화학교 양지과를 졸업한 측량기술자가 약간 있었을 뿐이었다.⁵¹ 이러한 상황하에서 1500만 정보에 이르는 광대한 산림을 아무런 대책도 없는 민중에게 강요하여 약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정책이었으며 다분히 국유림 창출이라는 식민지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대한매일신보는 「人民을 欺하야 陷井에 進入」⁵²한다고 하였겠는가.

일제강점 그 이듬해에 일제는 식민지 산림정책의 기반인 森林令⁵³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1897년 4월 삼림법이 제정(1907년 4월에 대개정, 그 시행은 1908년 1월)되었고, 오끼나와현은 1911년 4월에, 사할린은 1922년 4월부터 동법의 일부(제 76~94조, 제101조)를, 북해도는 보안림에 관한 규정만을 각각 시행했지만 조선은 대만, 관동주와 함께 독자제도(대만은 「臺灣森林令」, 관동주는 「林野保護取締規則」)을 창출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갔다.⁵⁴ 특히 이중 제7조는 조선만이 갖는 특수한 제도로 당시 조선에 맞지 않는 부분림제도를 폐지하고⁵⁵ 조림대부를 통하여 성공한 국유림을 무상 양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수한 제도였다(원래 이 제도는 일제가 북해도의 국유미개지를 처분할 때 처음 시도한 제도였다). 이는 산림이 풍부한 국유림에 일본의 독점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법적 뒷받침으로 실지 조림대부 현황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유별 산림자원의 특성과 공통점을 보인다. 즉, 평북·함남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 유역과 함북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의 대산림은 주로 국유림으로 존재하는 반면 인구가 많고 도시가 성장하는 中·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곧 국유림 지역으로의 독점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의 법적 기반은 「國有森林未墾地及產物特別處分令」⁵⁶으로 공고화 된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유림 및 국유 임산물에 대한 수의계약의 폭을 넓혀 일본 독점자본 및 이주민에게 임산물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제 4조 4항을

51. 李鎮昊, 1989, 大韓帝國地籍 및 測量史, 土地, p. 66.

52. 1908년 10월 2일 대한매일신보

53. 1911년 6월 20일 制令 제10호로써 발포.

54.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林野弘濟會, p.58~59.

55. 부분림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부분림 제도에서는 出金(출대금 또는 대부료) 등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량삼림은 매각되고, 불량산림은 유료대부로 하여 조림성공시 그것을 양여하는 제도가 유리하다. ②부분림 제도는 조림자에 유리한 산업이 아니었으며 부분림 설정 이후 공사의 번거로움이 많다. ③治山費가 증가할 경우 삼림수입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국가는 별기령 도달까지 무수입이라는 불리한 점이 있다(朝鮮山林會, 1933, 朝鮮林業逸誌, pp.196~197). 반면 지용하는 당시 한국민은 고래로 유래된 산림 사적금지로 제도가 인습적으로 장구히 계속된 관계상 전체 산야는 공유이며 종유인 성격으로 취급되어 그 한계가 지극히 미분화 된 것으로 인해 국유림의 처분이라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한국 임정사, 1964, 지용하, p.108).

56. 1912년 8월 14일 칙령 제 6호로 공포.

보면 「시업안을 집행할 때—— 삼림의 개선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 그 산물을 조선총독이 정하는 자격을 지닌 목재업자에 매각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일제의 정책이 일본 독점자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5. 산업적 측면에서의 침투

1) 제재 및 목제품 부문

일제 강점시기의 공업부문별 생산액 중 제재 및 목제품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하였다. 1929년 당시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는 부문은 식료품 공업으로 63.5%를 차지하여 당시의 공업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펠프공업의 확대와 전시경제체제에 알맞는 용재의 수탈 정책으로 상황이 변화한다. 三井財閥이 자본금 2천만원의 北鮮製紙化學工業會社를 설립한 후 많은 자본이 제지산업으로 침투한다. 1938년 일본재벌들이 한국에 설치한 업종별 회사수를 보면 발전과 송전에 5, 금속광업과 제련에 5, 석탄광업과 가공에 5, 제지에 2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지산업에 투자한 투자액은 5위의 맥주에 비하면 2.2배의 투자액이고, 6위의 방직업에 비하면 약 3배가 되는 투자액이었다.⁵⁸⁾

〈표 10〉 민족별 공장 공칭자본금액(1940년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선 인		일 본 인	
	금 액	%	금 액	%
금속공업	6,100	2	373,000	98
기계기구공업	61,500	42	85,000	58
화학공업	1,000	—	276,250	100
개스, 전기공업	—	—	553,030	100
요 업	—	—	53,245	100
방직공업	10,000	15	76,600	85
제재, 목제품공업	5,500	10	47,000	90
식료품공업	5,250	7	73,800	93
인쇄, 제본업	1,500	43	2,000	57
기 타	7,000	8	83,500	92
계	97,850	6	1,623,475	94

출처 : 朝鮮銀行, 1848, 朝鮮經濟年報.

57.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p. 120.

58. 미승우, 1983, 일제농립수탈상, p.46.

59. 李清源은 「朝鮮社會史讀本」에서 「한일합병 이후에 있어서 반봉건적 일본자본주의의 재현형태로서의 移植資本主義의 발달」이라고 당시 식민지 조선을 정의하였다.

제재 및 목제품공업에 있어 민족별 공장 공청자본금액을 통하여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표 10 참조). 1940년 당시 민족별 공청자본금을 보면 일본 자본이 94%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화학공업, 개스공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은 전체 일본인 자본에 의해 움직였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재 및 목제품 공업은 전체 공업 평균인 6%보다는 다소 높은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자본에 의해 예속되었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³⁰ 이러한 사실은 함북의 제재소 현황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제재상의 국적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재사명으로 유추하여 보건데 조선인 소유의 제재상은 허윤칠과 김순기만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9개 제재상은 일본 자본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나마 조선인 자본은 허윤칠의 휴업으로 김순기만이 유일한 제재상으로 남게 됐으며 공청자본금 및 불입자본금도 일본인 자본에 비해 열세인 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의 자본에 조선인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殖民地型工業形態’가 이 부문에서도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목재 및 제재산업으로의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는 대재벌에 의한 산림소유집중과 일본인 자본의 제재 및 목재산업으로의 침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1〉 함북지방의 제재소 현황(1927년 8월 현재)

공장명	소재지	공청자본금 및 불입자본금	직공정원
石田 製材所	清津府 浦項洞	25,000	日: 3 朝: 25 中: 1
朱乙 製材所	鏡城郡 朱乙溫面 仲鄉洞	20,000	日: 25 朝: 21 中: 10
杉野組 製材工場	鏡城郡 羅南面 本町	4,000	日: 1 朝: 1
籃澤 製材商	城津郡 城津面 本町	7,000	朝: 4 中: 2
北川 木材商	城津郡 城津面 本町	3,000	朝: 2 中: 2
植住 材木場	城津郡 城津面 本町	3,000	朝: 4
許允七 材木場	城津郡 城津面 本町	—	
金舜基 材木場	城津郡 城津町 旭面	500	
豆滿江 林業開發	會寧郡 會寧面 鱗山洞	100,000	朝: 24 中: 16
株式會社 製材工場			
岩林 製材工場	夕	50,000	日: 4 朝: 14
青邱 製材所	夕	10,000	朝: 17
11		222,500	日: 33 朝: 113 中: 31

주: 許允七 1911년부터 휴업.

출처: 岩本善文, 久保田卓治, 1928, 北鮮の開拓, pp.633~634.에서 작성.

2) 조림투자부문

그러면 실지로 조선에서의 조림투자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었겠는가를 실질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자. 물론 이 자료는 낙엽송과, 소나무라는 제한된 수종과 전국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일반성을 띠지 못하지만 당시 조선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에 의해 소유된 산림의 질적 차이와 이로 인한 이윤율의 차이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인 소유지에서의 이윤율이 조선인 소유지에서의 이윤율보다 소나무 조림과 낙엽송 조림의 경우 모두 1.8배,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벌기축 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량 산림을 조림대부 받은 일본인 소유의 산림에서 같은 자본을 투입해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당시의 저렴한 임금과 낮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의 독점자본이 조선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유인동기가 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대공황의 출현과 만주사변으로 인해, 산림부문에 있어서는 전쟁물자의 공급을 위해 계속적인 산림 벌채가 자행되고 당장 국유림의 산림을 벌채하여 펄프 산업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으므로 193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자본은 제재산업과 펄프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표 12〉 조림투자 기대 수익률

구 분	소 나 무			낙 엽 송		
	일본인소유	조선인소유	평 균	일본인소유	조선인소유	평 균
벌 기 령(年)	35	40	38	35	40	36
벌기축적(m^3)	88.13	97.60	95.08	193.46	117.76	182.15
1 m^3 당 입목대			7.09			5.61
수 확 량	624.49	691.61	673.74	1,085.60	660.80	1,022.11
비용(후가)	297.29	539.61	442.50	435.74	731.81	499.18
비용(전가)	53.90	76.61	69.30	79.00	103.95	86.21
벌기순수익	570.59	615.00	604.44	1,006.60	556.85	935.90
연년수입 환산액	6.32	5.09	5.61	11.14	4.61	9.76
이 윤(%/연)	11.73	6.64	8.10	14.10	4.43	11.31

출처 : 朝鮮山林會報, 第207號, pp.32~39을 이용하여 민족별로 재작성.

6. 산림소유집중 측면에서의 침투

1) 조림대부를 통한 산림소유집중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1934년까지 조림대부 총처분 건수중 일본인에 의한 조림대부 건수는 3%에 불과하지만 대부면적은 47.1%를 차지하여 일본인 자본의 산림소유집중을

〈표 13〉 일제시기 조림대부 처분의 추이

연도	건 수			()은 1인당 평균 조림대부 면적		
	일본인	조선인	총 수	일본인	조선인	총 수
1910	4	9	13	534	316	850
↓				(133.5정보)		
1915	190	8,822	9,012	10,762	32,297	48,059
↓				(104.0정보)		
1920	109	924	1,033	37,533	29,413	66,946
↓				(344.3정보)		
1925	71	1,200	1,271	20,965	10,340	31,305
↓				(295.3정보)		
1930	27	2,736	2,763	7,637	21,445	29,092
↓				(282.8정보)		
1934	3	6,847	6,850	14,911	28,773	43,684
↓				(4978.3정보)		
소계	2,448	79,924	82,372	642,118	720,001	1,362,119
	(3%)	(97%)	(100%)	(47.1%)	(52.9%)	(100%)
↓						
1941			25			79,010
총계			83,086			1,756,606

출처 : 1910~1917년은 朝鮮の林業, 1923, p.25에서 발췌했으며, 1918년부터 1932년까지는 朝鮮の林業, 1934, pp.22~23에서 발췌했으며 1933, 1934년은 朝鮮の林業, 1935, pp. 24~25에서 발췌했다.

1935~1941년의 자료는 朝鮮山林會報, 第212號, pp.43~44에서 발췌했다.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본인 1인의 조림대부 면적은 262.3정보로 조선의 9정보에 비하여 약 30배에 가까운 규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인의 조림투자가 1925년을 기점으로 건수면에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림대부면적의 감소로 인한 취득곤란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을 지닌 일본의 독점자본과 만주사변 이후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필요로 하는 일제의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조림대부 건수가 급속히 줄어든 반면 대부면적은 1건수 당 5천정보에 이르게 된 사실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4년 1월에 이르러 경상북도에서는 조림대부제도가 거의 완성됐다고 하여 처분방침을 매각처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에서도 이 조림대부 건수의 감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⁶⁰⁾

60. 朝鮮山林會, 1935, 朝鮮林務提要, p. 468.

〈표 14〉 1만정보 이상의 조림대부자

(단위 : 정보)

소유자명	대부중	성공양여지	총계
住友合資會社	47,778	27,764	75,542
東洋拓殖株式會社	28,304	21,971	50,275
山下合名會社	18,459	17,083	35,542
三井合名會社	11,582	23,395	34,977
株式會社 中村組	16,013	15,846	31,859
半田善四郎	17,228	3,515	20,742
片倉殖產株式會社	9,268	5,520	14,788
野村林業株式會社	10,197	3,483	13,680
多木久米次郎	7,333	4,512	11,845
古我合名會社	10,254	—	10,254
1 0	176,425	123,089	299,514

출처 :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林野弘濟會, p.66 재인용.

이 조림대부 제도는 대부면적은 무제한이고 유료대부였지만 특별연고 산림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부하였고 官苗역시 무료로 양여하였다. 또한 森林令 공포 이듬해에 「造林事業成績 認定에 關한 件」을 결정하고 1923년 개정한 것⁶¹에 의하면 평균 임목도 7/10이상, 천연조림 구역은 임령 8년이상, 인공조림 구역에서는 식재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자는 대부기간의 완료 여하와 관계없이 성공으로 보고 삼림을 무상 양여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명확히 대산림 지주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8년 4월 일본 전국 俯縣林務主任 회의에서 조선에서의 조림투자의 유리성을 설명한 총독부 산림과장 田中卯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조림투자는 ①대면적의 토지를 얻기 편리한 점 ②조림지존의 필요가 없는 점 ③매입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④노임이 저렴한 점 ⑤조림대부의 특전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⁶² 마지막으로 밝힌 조림대부의 특전은 자산비용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극히 저렴한 요금을 징수하여 상당한 면적을 대부하여 주고 사업 성공시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써 일본인 자본을 유입하는데 커다란 유인책이 되었다.

다음은 조림대부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즉, 1921년도까지 처분된 총면적 68.1만 정보 중, 1,000정보 이상의 지주가 점하는 면적은 47%, 또 1만정보 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산림지주 7인이 점유한 면적이 22%에 달하고 있다.⁶³ 4년이 지난 1925년도말 현재⁶⁴를 보면 1만정보 이상은 같은 7인이나 천정보 이상은 도리어 1명 감소한 58명 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거대지주는 정체하였다. 이후의 대산림 지주수를 보면 1927년에 천정보 이상 소유자는 60인,

61. 朝鮮山林會, 1935, 朝鮮林務提要, p. 490.

62.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pp. 60~61.

63. 朝鮮總督府, 1923, 朝鮮の林業, p. 24.

64. 朝鮮總督府, 1926, 朝鮮の林業, p. 22.

1932년도 말은 86인, 1939년도 말은 10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대산림 지주체제는 조림대부 창설후 10년이 지난 1920년대 초에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인의 조림대부 면적중 1만 정보 이상을 대부받은 기업은 10개로, 대부분 독점재벌이나 국책회사로 이루어졌다. 이 10개의 기업이 조림대부를 받은 면적의 총합은 약 30만 정보로 1934년 까지의 전체 조림면적중 47%를 차지하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 당시의 소유구조와 조림대부제도 실시 이후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히 입증된다.

1911년 조선의 임업사정을 시찰한 平態友明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李王家 이외의 사유림에서 100정보 이상의 소유자는 34명으로 최고 소유자조차 1,500정보에 지나지 않았지만⁶⁵ 조림대부라는 제도 설정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당시 최대 산림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일본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국책회사와 재벌로써 東洋拓殖株式會社, 大寶農林部株式合資會社, 三井 合名會社, 住友 合資會社, 中村組 農林部 株式會社, 片倉殖產 株式會社, 山下 合名會社 등 7개사로 이들은 전부 조림대부 제도로 창설된 대산림 지주였다.⁶⁶ 이러한 일본인 자본이 조선의 산림을 집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출발에 있어 먼저 조림대부를 받은 후 주변의 연고 임야 및 사유 임야를 매수하여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1917년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다.⁶⁷ 이들의 임야는 일반적으로 타 조림대부지 보다도 운송거리가 짧아 경제적이고 임상(치수발생)이 양호한 가운데 토지가격이 보통 1정보당 2~10円, 평균 3~4円이라는 저가격이었기 때문에 유리하였다. 또한 노임이 저렴하고 잡초류의 연료이용이 많았기 때문에 지준비, 하예비가 들지 않고 들어도 거의 소액이었다. 이들의 제요인에 의한 임야의 집중은 임야조사사업(1917~1924)에 의한 임야권리 관계의 확정과 전후 공황에 동반하여 투자상 유리한 임야의 대면적 매입이 1921년부터 크게 촉진되었다.⁶⁸

2) 불요존림 양여를 통한 산림소유집중

또한 임적조사후 연고가 불확실한 불요존림의 처분결과를 보면 일본인에 의한 산림의 집중이 보여진다. <표 15>에 제시된 것처럼 조선인의 취득자 비율은 95.9%이지만 면적 비율로서는 45.1%여서 1인당 평균 5.2정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일본인의 취득자 비율은 4.1%이면서도 면적 비율은 54.9%에 달하여 1인당 평균 149.4정보나 된다. 이는 조선인 취득면적의 28.7배로 조림대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⁶⁹

65. 山林局, 1913, 韓國森林視察復命書, pp.10~12.

66. 이 7개사는 1926년 조선 산림회 대회에서 제1회의 임업공로자로서 선발되었다(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p. 65).

67. 掛場定吉, 朝鮮に於ける造林事業お紹介す, 大日本山林會報, 第146號, p.57.

68. 齊藤音作, 有望なる朝鮮の植林事業, 大日本山林會報, 第465號, pp.29~30.

69. 합병 초기에 목포임업연구소에 임업기사로 있던 松野義次의 회고를 보면, 가령 「농과대학 연습림으로 2만 2천정보, 今井五介씨의 출원 瑞氣山 1천 정보, 조선 귀족단 출원 女貴山 2천 3백정보, 小川平吉의 출원 達摩山 1천 8백 정보」(산림회, 1933, p.194)이라고 부를 정도로 임야처분은 정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대부로 쓸 만한 임야는 이미 빼돌려 놓고서는 처분되지 않는 임야를 대상으로 하여 연고림 양여령을 제정하여 선선행장을 베풀듯이 선전했던 것이다(한국 농경련, 1990).

〈표 15〉 불요존림 취득자 성분내역 (1910~1923)

(면적 : 정보)

연도	조선인		일본인		총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910	9	230	6	622	15	852
1911	70	773	23	639	93	1,412
1912	3,322	8,662	129	6,039	3,451	14,701
1913	21,428	40,023	298	19,039	21,716	59,062
1914	17,236	64,644	337	50,733	17,573	115,377
1915	14,108	61,148	331	13,510	14,439	74,658
1916	10,526	58,856	265	18,239	10,791	77,095
1917	4,022	59,848	225	27,800	4,247	87,648
1918	1,071	43,793	279	62,486	1,350	106,279
1919	1,196	37,112	290	53,866	1,486	90,978
1920	1,875	2,723	222	81,477	2,097	84,200
1921	1,768	3,086	646	64,954	2,414	68,040
1922	3,280	4,492	268	92,312	3,548	96,804
1923	3,437	51,174	233	38,863	3,670	90,037
총계	83,348	436,564	3,552	530,579	86,900	967,143

출처 : 朝鮮總督府, 1925, 朝鮮の林業, p.21.

불요존림 처분과 조림대부 제도를 통하여 일본인이 직접 산림을 집중한 면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만 정보 이상으로 추측된다. 이는 1934년까지 일본인이 조림대부제도를 통해 양어받은 면적이 64만 정보로 1941년도 말까지 같은 비율이라면 90만 정보이상일 것으로 추측되며, 불요존림 처분으로 인한 일본인의 산림집중은 1923년까지 50만 정보로 거대한 산림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 직접소유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불요존림의 처분에는 조림대부를 통한 양여가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공체해야 하나 통계연도가 각각 1934년, 1923년 임을 감안한다면 일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산림소유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대면적 산림소유자를 통해 본 침투결과

20세기를 접어들면서 계속되는 자본주의 공황은 제국주의의 고통을 식민지로 전가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와 일본독점자본의 요구에 의해 조선 민중은 토지로부터 대규모로 이탈하게 된다. 이 이탈된 토지는 결국 일제의 자본에 의해 집중되었으며, 산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의 임지 가격은 일본의 1/20~1/40 정도로, 일본에서 1정보당 600円 정도 하는 임야가 조선에서는 15~30円이라는 짠 값으로 살 수 있었고⁷⁰ 공황과정을 통하여 임야집중 속도가

70.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p. 97.

〈표 16〉 1935년도 사유림의 소유구성

면적 계층	소유자 수		임야 면적		1인당 면적
	인수	%	면적	%	
1정보 미만	799,686	39.8	318,632	3.2	0.4
1 -- 5정보	795,042	39.6	1,994,154	20.4	2.5
5 -- 20정보	342,584	17.0	3,267,266	33.5	9.5
20 -- 50정보	57,133	2.8	1,657,454	17.0	29.0
50 -- 100정보	10,522	0.5	703,725	7.2	66.9
100 -- 300정보	3,634	0.2	579,551	5.9	159.5
300정보 이상	1,323	0.1	1,245,122	12.8	941.1
총계	2,009,924	100.0	9,765,904	100.0	4.9

주 : 경상북도 및 전체 면, 도유림이 제외되었다. 함경북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조사 당시에 임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부가 없고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수는 면마다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수는 다소 작다.
 - 공유의 임야는 각각 공유자 전부를 1인으로 하였다.

출처 : 朝鮮山林會報, 第137號, p.91에서 작성.

가속화된 것이다.

이들 일본인 자본의 산림 집중을 보자. 〈표 16〉은 1935년 12월 1일 현재의 함경남·북도 및 전체의 면, 도유림을 제외한 사유림 소유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임야 소유자의 0.3%에 지나지 않는 100만 정보 이상의 소유자가 18.7%를, 또 50정보로 확장하면 0.8%의 소유자가 25.9%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의 1인당 산림면적은 4.9정보로 일본에서의 2.4정보에 비해 큰 데⁷¹ 이 차이의 주 원인은 일본인 자본진출을 중심축으로 하는 거대 산림지주의 창출에 있다. 도, 면유림 및 조림대부를 받은 300정보 이상의 전 조선 민유림의 46.6%는 실지로 5,000정보 이상의 거대 지주가 점하고 있다.

〈표 17〉은 산림을 5천정보 이상 소유한 53개 단체 및 사람을 조선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수적으로 보면 일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29개로 조선인이 소유한 24개 산림보다 5개 많으나 실질적으로 도유림 13개와 사찰림 3개 등 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자본 소유는 5개에 불과하다. 이는 자본의 열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일본 자본의 산림소유중 조림대부 및 불요존림 양여를 통한 국유림 소유가 조선 자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5.8배)은 식민지라는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산림집중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정점에 東洋拓殖 株式會社가 있고 소유면적은 11.6만정보를 소유하

71. 朝鮮山林會報, 第137號, p. 91에서 작성.

72. 1921년에 창립하였고 住友家가 1919년부터 경영하고 있던 임야를 계승함과 동시에 대면적에 걸친 조림대부를 받아 대산림 지주가 되었다.

〈표 17〉 일제시기의 5천정보 이상 산림소유자

소유자 (조선인)	소유면적 대부 받은 합계 국유림면적	소유자 (일본인)	소유면적 대부 받은 합계 국유림면적
창덕궁	37,174	37,174	伊藤産業 會社:
경기도	23,469	23,469	半田農林 會社:
충북	9,940	9,940	北鮮林業 會社:
충북	5,567	5,567	東洋拓殖 株式會社:
충북	10,516	2,217	朝鮮金剛林業 株式會社:
충북	10,430	10,430	大寶 農林部
충북	10,062	2,683	片倉殖產 會社:
충북	17,432	17,432	吉村 農林部
충북	10,626	10,626	故基礎社:
충북	16,722	16,722	甲子不動產 株式會社:
충북	15,774	15,774	古我 合名會社:
충북	9,571	9,571	宮民 協會
충북	15,048	15,048	麻生西會 株式會社:
충북	19,260	19,803	愛隣社:
충북	10,614	10,614	三陽農林 株式會社:
충북	7,581	7,581	鮮滿拓殖 株式會社:
충북	31,179	31,179	住友 合資會社:
충북	12,172	12,172	大和田正吉
충북	9,653	9,653	高取九郎
충북	6,441	6,441	日代三吉 외 3명
충북	—	5,798	中村太平
충북	—	5,939	中村 澤
충북	—	5,362	柳田又一 외 2명
충북	5,831	5,831	松岡俊三 외 1명
충북	—	—	手塙安彦
충북	—	—	多木久米次郎
충북	—	—	野村 株式會社:
충북	—	—	朝鮮農工 株式會社:
충북	—	—	三井 合資會社:
충북	24	295,062	22,543 327,605
충북	—	12,294 1억 53억	939,3 13,233
충북	24	—	면적 195,477.6
충북	—	—	면적 1/인당 : 18,014.6
충북	24	12,294 1억 53억	면적 15,468 1억 29
충북	24	—	면적 15,468 1억 5,468
충북	24	—	면적 158,546 607,171
충북	24	—	면적 5,468 20,937

자료 :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137號, pp.91~92에 서 작성

였으며 2위는 住友 合資會社⁷³(8.5만 정보), 제3위가 三井 合名會社⁷⁴(7.5만 정보)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인 최고의 산림소유자는 단체로 평북의 普賢寺로써 3.5만 정보를, 개인으로는 정회찬으로서 5,939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 자본에 비해 열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재벌회사가 수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植民地 時期 私有林業」 전개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짚숙히 보면 1933년 현재 전 조선의 농가중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겨우 56%(재촌산림 소유자는 44%, 부재 산림소유자는 12%를 점함)로 나머지 44%는 임야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였다.⁷⁵ 또한 1933년에 겨우 제도화된 임야세는 대자본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였다. 세율은 임야조사에 의한 면적비율로 했지만 비과세(보안림, 낮은 생산임지, 소면적 임야 등)를 취했기 때문에 조림대부 등에 의한 幼齡林이 대부분인 대소유자의 부담경감은 영세 소유자 보다도 매우 커졌다. 이 임야세에는 국세와 부읍면의 침가세가 없기 때문에 1936년도 까지 총액 100万円(1정보당 평균 10전)에 지나지 않았고 게다가 그 전액을 민유림의 보호, 지도에 충당했기 때문에 대산림 소유자에게는 무세와 같았다.⁷⁶

결국 일본 독점자본의 임업부문으로의 침투는 법적, 제도적 기반정리를 발판으로 국책 회사인 東拓과 대재벌인 三井, 住友를 앞세워 광대한 산림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 자본이 영구히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장기 포석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되는 전쟁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조선의 산림자원을 전쟁물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재수탈정책과 팔프산업 육성책으로 이동하게 된다.

II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일제에 의한 조선에서의 임업정책과 식민지자본의 침투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1910년도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약 6억m³, 1정보당 37.3m³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용하의 추정보다 약 1억m³이 작은 것이지만 일제에 의한 유일한 전국조사를 바탕으로 성립지에 가중치를 주어 추정한 것으로 일제의 산림수탈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임목축적을 살펴보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의 산림은 압록강유역의 평북과 함남에 61%의 산림이, 두만강 유역의 함북과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도에 24%의 산림이 편중되어 존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중부와 남부 지역의 산림이 황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관북(北鮮)이나 관서(西鮮)지역에 비해 임야율은 낮고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대량의 연료림을 주위의 산림에서 충당하였던

⁷³. 1913년 이후 조림대부를 받은 외에 사유림을 대면적에 걸쳐 매수하였다.

⁷⁴. 朝鮮山林會報, 第113號, pp.78~79.

⁷⁵.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p. 99~100

원인과 조선 말 사회의 혼란으로 禁山의 崩壞 및 林政의 혼란이 원인이 되어 산림이 황폐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산림의 지역별 편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제는 二線 山林政策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 2) 일제 강점기 임야의 면적은 1927년 1,647만정보를 정점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임목축적에 있어서는 임적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 1910년 6억m³에서 1942년의 2.2억m³으로 줄어들어 일제강점기의 이 시기가 임업부문의 자립성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시기라 규정할 수 있다.
 - 3) 일제강점기 근대적 소유권 창출이라는 관점은 일제에 의한 왜곡된 관점이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산림소유관계를 근대화 시켰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온 촌락공유림 및 임회관행을 무시한 채 식민지 임업정책을 내적으로 보장하는 식민지 임업정책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산림소유의 근대성」이라는 외피를 쓴채 등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대규모로 창출된 국유림의 법적 재확인 및 일본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식민지적 산림소유권의 확인」이라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
 - 4) 임업부문으로의 일본 자본의 침투를 위한 법적 정지작업은 森林法을 통한 사유림 소유자 창출, 森林令에 조림대부 제도를 설정하여 독점자본의 산림집중을 유도하고, 國有森林未墾地 及 產物特別處分令을 통하여 일본인 자본이 쉽게 國有林의 未墾地 및 產物을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 5) 목재 및 제재산업으로의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는 공청자본금의 비율에서 잘 나타나는데, 일본인 자본이 90%로서 광범위한 침투가 1940년말까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이는 대체별에 의한 산림소유집중 및 목재산업으로의 자본침투와 일본인 소자본에 의한 제재산업으로의 침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일본인 자본의 조림투자 수익률은 조선인의 그것보다 소나무 조림의 경우 1.8배, 낙엽송 조림의 경우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 소유토지가 우량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는 결국 조림대부 및 불요존림 양여를 통한 일본인 산림획득이 대부분 우량 임지를 취득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 7) 5천정보 이상의 산림소유자 53명 중 29명은 일본인 자본으로, 대부분 조림대부를 통하여 산림집중을 이루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비호아래 거대한 산림을 조림대부제도를 통하여 획득하고 주변의 산림을 합병하여 산림소유집중을 이루었으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조선의 저렴한 산림가격 및 노동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일본 대규모 자본을 지닌 재벌 및 국책회사로서 일본 독점자본의 산림집중으로 침투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조선인 소유의 산림은 도유림 및 사찰림을 제외하면 5명의 개인 산림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일본인 산림소유에 비하여 열세였다. 또한 일본인이 직접 우리나라의 산림을 소유한 면적은 최소한 100만정보 이상으로 이는 조림대부와 불요존림 양여를 통한 집중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제의 식민지 임업정책은 식민지 母國의 이익을 우선으로

조선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인의 식민자본의 침투를 돋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임업의 근대적 발전을 밑바탕에서부터 저해하는 임목축적의 대폭감소와 임업경영자의 육성없이 일본인에 의한 산림소유집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우리나라 임업의 근대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1.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 강영심, 1983,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上, 한국학보, 제33집.
3. 강영심, 1984, 일제하의 「朝鮮林野調查事業」에 관한 연구, 下, 한국학보, 제34집.
4.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5. 김용덕, 1969, 日帝의 經濟的 收奪과 民擾(1910~1918), 上一, 역사학보, 제41집.
6. 김우영, 1977, 日本의 韓國森林政策에 대한 小考－日本의 進出時期를 中心으로, 동아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일자
8. 동아일보 1922년 3월 26일자
9. 동아일보 1923년 3월 26일자
10. 米昇右, 1983, 日帝農林收奪相, 祿苑出版社.
11. 배재수, 윤여창, 1993, 우리나라 山村問題의 史的 考察에 관한 研究, 임업경제 창간호.
12. V.I.레닌, 남상일 역, 1988,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3. 世宗實錄 永樂18年 2月
14. 신용하, 1990,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15. 安秉直, 1971, 1930年 이후 조선에 침입한 日本獨占資本의 정체, 經濟論集 10권 4호.
16. 윤병석, 1964, 일본인의 황무지개척사업요구에 대하여－1904년 長森名義의 위임계약 기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2집.
17. 이만우, 1974, 李朝時代의 林地制度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李鎮昊, 1989, 大韓帝國地籍 및 測量史, 土地.
19. 李清源, 1936, 朝鮮社會史讀本.
20. 조응혁, 1966, 李朝時代의 林野制度에 關한 史的 考察－林野所有形態의 變遷過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池鏞夏, 1964, 韓國林政史, 明秀社.
22. 한국농경련, 1990, 산지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연구보고 226.
23. 韓國農政四十年史, 198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24. 한동환, 1992, 조선전기 한양금산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5. 掛場定吉, 朝鮮に於ける造林事業お紹介す, 大日本山林會報, 第146號.
26.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歷史學研究, 第297輯.

27. 大日本山林會, 1931, 明治林業逸史(正).
28. 山林公報, 1918, 제6호.
29. 山林局, 1902年, 韓國森林視察復命書.
30. 山林局, 1904年, 鴨綠江地域森林作業調査復命書.
31. 松本伊織, 1925, 朝鮮の林野制度, 朝鮮, 第123卷.
32. 新義州營林署, 1939, 新義州營林署 事業要覽.
33. 岩本善文, 久保田卓治, 1928, 北鮮の開拓.
34. 鴨綠江採木公司, 1919, 鴨綠江林業誌.
35. 齊藤音作, 有望なる朝鮮の殖林事業, 大日本山林會報, 第465號.
36. 齊藤音作, 1933, 朝鮮林業逸誌: 韓國政府時代の林籍調査事業, 朝鮮山林會
37. 朝鮮山林會, 1933, 朝鮮林業逸誌.
38. 朝鮮山林會, 1935, 朝鮮林務提要.
39.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96號.
40.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113號.
41.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137號.
42.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207號.
43. 朝鮮山林會, 朝鮮山林會報, 第212號.
44. 朝鮮銀行, 1948, 朝鮮經濟年譜.
45. 朝鮮總督府 殖產局, 1923, 朝鮮の林業.
46. 朝鮮總督府 殖產局, 1926, 朝鮮の林業.
47. 朝鮮總督府 殖產局, 1927, 朝鮮の林業.
48. 朝鮮總督府 農林局, 1940, 朝鮮の林業.
49. 朝鮮總督府土地調査局, 1918, 朝鮮土地調査
50. 朝鮮總督府 林野調査委員會, 1936,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51. 朝鮮總督府 鐵道局 營業課, 1933年, 朝鮮に於ける林產品に関する經濟調査, pp.15~16.
52. 朝鮮總督府, 1913, 傷習調査報告書, pp. 93~121.
53. 朝鮮總督府統計年譜 各年度.
54. 萩野敏雄, 1964, 朝鮮·滿洲·臺灣 林業發達史論, 林野弘濟會.